

◆ 강동구고시 제2026-107호

도시관리계획(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126호(2026. 3. 12.)로 결정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1일

강 동 구 청 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명일동 305-51 관련하여 대상지에 지정된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고, 공동주차 출입구를 지정(경미한 변경)하는 사항임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-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위 치	내 용		비 고
		기 정	변 경	
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	명일동 305-51	◦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(단, 공동개발 미이행시 공동주차출입구 설치)	◦양재대로변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(명일동 305-51) 해제	결정도 참조
공동주차 출입구		-	◦공동주차출입구 1개소 지정	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서
◦(명일동 305-51)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 및 공동주차출입구 지정	◦이면부 필지와의 공동개발이 어려워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고 공동주차출입구 지정을 통해 개별 필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

III. 관계도서: 생략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도시관리계획(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[기 정]



[변 경]

